

전기용품안전인증면제 확인기관지정에관한고시

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용품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검사 또는 확인기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(산업자원부고시 제2000-95호 2000년 9월 16일)

1.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안전인증기관

기관명	소재지	연락처	비고
산업기술시험원	서울 구로구 구로3동 222-13	02-860-1559	안전인증 수행범위 에 한함
한국전기전자 시험연구원	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692-8	031-455-7654	
전자과장해공동 연구소	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제일리 80	031-336-1186	

2 각 시·도지사

가.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전용으로 수입되는 전기용품에 한한다.(수출전용으로 수입되는 전기용품중 전년도 수입건수가 20회 이상인 업체 및 향후 수입빈도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는 일괄요건면제확인)

나. 통합공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면제수입확인(신청)서 사용

다. 요건면제수입 일괄확인업체 지정(신청)서 (별지서식)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산업자원부고시 제2000-66(2000. 7. 7)를 폐지한다.
- ③ (경과조치)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안전인증 면제확인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 의해서 안전인증 면제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.